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26.)

조례·출연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옥]

목 차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	1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	15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3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30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정이유

-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다. 이차보전 등 지원 및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주점업,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 라.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 규정(안 제5조)
 -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차

-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 마. 착한가게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등
- 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7조)
- 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차보전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원 절차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아.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등
- 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 조치: 300백만원 '17년도 예산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예산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9. 20. ~ 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등 지원과 제외 대상(안 제4조)
 -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안 제5조)
 - 착한가게 특례 지원(안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 반환기준, 변상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현행: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
 - 개정: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
- 나. 분할납부 대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5조)
 - 현행: 채취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개정: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 반환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7조)

-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의미 삭제
- 감면 시에도 반환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 반환기간은 허가취소 등을 한 다음 날부터 일괄 계산 등

라. 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변상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 변상금: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의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마.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 2)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50퍼센트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9. 14. ~ 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타법 개정 등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 반환기준 등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점용료 등의 조정 증가율 하향 조정(안 제4조)
 - 분할납부 대상·방법 구체화(안 제5조)
 - 반환기준 의무화 및 구체화(안 제7조)
 - 변상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 2) 등을 개정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26.)

조례·출연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옥]

목 차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	1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시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	15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3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30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정이유

-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다. 이차보전 등 지원 및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주점업,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 라.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 규정(안 제5조)
 -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 마. 착한가게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등
- 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7조)
- 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차보전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원 절차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아.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등
- 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 조치: 300백만원 '17년도 예산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예산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9. 20. ~ 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등 지원과 제외 대상(안 제4조)
 -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안 제5조)
 - 착한가게 특례 지원(안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 반환기준, 변상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현행: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
 - 개정: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
- 나. 분할납부 대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5조)
 - 현행: 채취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개정: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 반환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7조)

-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의미 삭제
- 감면 시에도 반환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 반환기간은 허가취소 등을 한 다음 날부터 일괄 계산 등

라. 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변상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 변상금: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의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마.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 2)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50퍼센트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9. 14. ~ 10.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타법 개정 등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 반환기준 등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점용료 등의 조정 증가율 하향 조정(안 제4조)
 - 분할납부 대상·방법 구체화(안 제5조)
 - 반환기준 의무화 및 구체화(안 제7조)
 - 변상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 2) 등을 개정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0.1.]

□ 「하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타법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

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 ②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2013.1.1.>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정이유

-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4조)
 -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 및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
 -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공급
- 다. 해외통상자문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기능: 해외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 대상: 상공인, 국제교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2명 이내 위촉
 - 지원: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라.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전문단지, 조직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생산관리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사. 수출 우수기관의 시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아. 보조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별표의 기준에 따름

(지원율: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0~100%)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 조치: 33백만원 '17년도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예산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9. 1. ~ 9.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수출품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안 제3조)
 -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해외통상자문관 위촉·기능·경비지원(안 제5조 ~ 제7조)
 - 해외시장 개척 필요경비 지원(안 제8조) 등을 규정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9.5., 타법개정]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98호, 2016.5.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 산성 향상 지원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 예 농 산 물 FTA경쟁력 강 화 및 지속가능 한 농업 지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체험 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사 업 비: 1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	100	100	-	-	100	-

- 사업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사업 컨설팅 지원

4. 부서 의견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 경남 시·군별 출연금 현황: 붙임 3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붙임 4

6. 검토 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1.5%, 경남도 34.5%, 지방자치단체 1.9%, 금융기관 35.1%, 기업체 4.9%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군의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5년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 향후, 경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시 출연 비중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 하는 등 인센티브 차등화가 검토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055-212-125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경기재단에 이어 전국 2번째) ○ 2000년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04년 9월 진주지점 개점 ○ 2011년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1년 11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달성 ○ 2014년 3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금액 3조원 달성 ○ 2015년 1월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2본부3부1팀 ⇒ 1본부2부8지점) ○ 2015년 4월 거창지점 개점 ○ 2015년 5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5년 8월 누적보증공급 4조원 달성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4 명	81 명	3 명	
임원 (‘16.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이광시	(주)영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년
	비상임이사	김형*	경상남도기업지원단장	2년
	“	엄진*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	장현*	현대로템(주)창원공장공장장	“
	“	이성*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
	“	이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	이진*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
감사	송정*	공인회계사송정아사무소 대표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기본재산관리, 구상권의 행사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86,125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1,87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210,291 (자산 총액)
	예산액 ¹⁾	8,720	8,592	8,768		부채	24,16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0	0	0		자본	186,12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618			15,529		-911	

[붙임 2]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 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3] 시·군별 출연 현황

【2016.7.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8	1	1	4	5	13	14
창원시	7	1		2	1	2	1
진주시	3				2		1
통영시	2		1			1	
사천시	2					1	1
김해시	3					1	2
거제시	8			2	2	2	2
양산시	3					1	2
의령군	1					1	
함안군	2					1	1
창녕군	2						2
고성군	1						1
산청군	1						1
함양군	1					1	
거창군	1					1	
합천군	1					1	

※ 미 출연 시·군 : 밀양시, 남해군, 하동군

[붙임 4]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평 균 점유율	2017년도 출연요청 금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47,382	100	10,037	100	1,824	100	100	28.5
창 원	19,256	40.70	3,605	35.90	660	36.20	37.60	5
진 주	5,652	11.90	1,265	12.60	171	9.40	11.30	2.5
통 영	1,625	3.40	437	4.40	71	3.90	3.90	2
사 천	1,207	2.60	303	3.00	56	3.10	2.90	1
김 해	7,752	16.40	1,704	17.00	377	20.70	18.00	3
밀 양	805	1.70	174	1.70	33	1.80	1.70	1
거 제	2,434	5.10	648	6.50	74	4.10	5.20	2
양 산	3,841	8.10	806	8.00	143	7.80	8.00	2
의 령	193	0.40	44	0.40	10	0.50	0.50	1
함 안	994	2.10	221	2.20	56	3.10	2.50	1
창 녕	387	0.80	113	1.10	20	1.10	1.00	1
고 성	398	0.80	101	1.00	20	1.10	1.00	1
남 해	361	0.80	85	0.80	13	0.70	0.80	1
하 동	298	0.60	67	0.70	15	0.80	0.70	1
산 청	279	0.60	88	0.90	9	0.50	0.70	1
함 양	253	0.50	79	0.80	11	0.60	0.60	1
거 창	565	1.20	168	1.70	21	1.10	1.30	1
합 천	206	0.40	51	0.50	10	0.50	0.50	1
기 타	876	1.90	78	0.80	54	3.00	1.90	-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3: 1억원, 3 ~ 10: 2억원, 10 ~ 15: 2.5억원, 15 ~ 20: 3억원,
- 20 ~ 25: 3.5억원, 25 ~ 30: 4억원, 30 ~ 35: 4.5억원, 35 초과: 5억원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0.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0. 18.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업비: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7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00	200	200	-	-	200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2013년부터 연구센터 운영비로 매년 2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 연구센터는 무분별한 중국산 석재 수입 및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또한,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 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전체 운영 예산의 50%(2014년 전체 운영예산의 40%, 2015년, 2016년 전체 운영예산의 50%)를 충당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와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앞으로 자체 경영진단 및 경영수입사업 확대 등으로 출연금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			
임원 ('16.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조○○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강○○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59 (자산 총액)
	예산액 ²⁾	330	400	401		부채	1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200	200		자본 ¹⁾	14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00			329		71	

[붙임 2] 관계 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